

게 시 판

■ 입법예고

- 방송법(안)
- 국제우편규정개정(안)

■ 공고

- 하반기국산기술인정예정기술

■ 고시

- 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요령중개정
- 기간통신사업자이용약관신고기준
- 무선설비에대한기술적조건개정

■ 훈령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규정개정

◎ 공보처공고 제1995-5호

방송법(안)입법예고

(공포일 95. 9. 28)

제정취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폐지하고 이를 단일방송 체계로 통합하며, 규제완화를 통하여 뉴미디어·멀티미디어시대에 적극 호응하는 한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방송의 기본정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방송정책의 효율적 수립·조정을 위하여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둠.

나.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국운영자 및 전산망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채허가등의 절차를 규정함.

다. 대기업과 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되 보도전문편성방송에 대하여는 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함.

라. 방송사업자·대기업 및 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종합유선방송국운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종합유선방송국운영자의 상호경영 및 복수운영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허용함.

바. 현행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단일방송위원회로 통합함.

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접근권을 신설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함.

아. 방송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방송기술연구기관·방송프로그램보관소·방송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방송제작단지·방송프로그램의 유통촉진 및 방송의 국제협력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공고 제1995-129호

국제우편규정개정(안)입법예고

(공포일 95. 9. 2)

개정취지

만국우편연합조약 개정내용의 국내시행과 관련된 조

항을 정비하고 현행 국제우편업무 제도상의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우편이용 편의 증진 국제우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림엽서, 인쇄한 명함 또는 인쇄한 경조카드 등에 한글로 의례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15자 이내로 하던 것을 폐지하여 제한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나. 항공서간의 체신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사제가능하고 조제시마다 조제매수 및 조제년월일을 신고하며 성명·주소 또는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자유로이 조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항공보통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납부한 요금에 상당한 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항공편으로,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선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는 우편요금이 미납된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납부한 요금에 불구하고 모두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신속히 송달하도록 함.

1. 1995년도 하반기 국산신기술인정 예정기술

가. 전기·전바분야(16개 기술)

회 사 명	기 술 명	인 정 기 간
LG전자(주)	고효율, 고생산성 열교환기용 핀 설계·제조기술	2년
LG전자(주)	10Vane에 의한 산업용 마그네트론의 소형화기술	3년
(주)경덕전자	모터구동형 IC 카드 판독기 설계기술	2년
금호전기(주)	관경 26mm 절전형 형광램프 제조기술	2년
대우전자(주)	건조겸용 세탁기 제조기술	2년
대우전자(주)	전자렌지 전자파 차단 및 금형 제조기술	2년
대우전자(주)	냉장고 냉각기에서의 착제상 제어기술	2년
동양매직(주)	교반식 세탁기용 트랜스미션 동력전달 기술	2년
(주)로켓트전기	충전식 소형 원통 Ni-MH 전지 제조기술	2년
삼성전자(주)	냉장고의 냉동·냉장 독립 냉각 SYSTEM	2년
삼성전자(주)	면발광 홀로그래프 광픽업 기술	2년
삼성전자(주)	REALTIME DIGITAL CONVERGENOE SYSTEM	2년
이화전기공업(주)	고역률 개별 순시치 제어형 전력변환기술(IGBT TYPE)	2년
청호정밀(주)	반도체를 이용한 냉각기술	2년
현대중공업(주)	선박용 분산제어 시스템(DCS)	2년
현대중공업(주)	DSP를 이용한 190KVA급 철도 차량용 보조전원장치 기술	1.5년

라. 등기·소포우편물의 망실·도난·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을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에 의거 인상함.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국제우편과장, 750-2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 과학기술처공고 제 1995-47 호

1995년도 하반기 국산신기술인정 예정기술공고

(공포일 95. 10. 4)

1995년도 하반기 「국산신기술인정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 당사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하여 이를 확·고시하고자 1995년도 하반기 국산신기술인정 예정기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정보통신분야(7개 기술)

회 사 명	기 술 명	인 정 기 간
대영전자공업(주)	AM광CATV전송기술	2년
(주)디지탈로직	인레이기법을 이용한 영상관련 통합기술	2년
삼성전자(주)	8채널 DTMF 및 TONE 검출 신호처리기술 및 ASDSP	2년
(주)아펙스시스템즈	원격 의료정보 전송기술	2년
(주)에이스안테나	HIGH-O, DR을 이용한 CAVITY FILTER 기술	2년
(주)진보엔지니어링	인공위성을 이용한 차량종합 관리시스템	2년
(주)하이시스	GIS 자료입력용 벡터라이징기술	2년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5-365 호

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요령중개정

(공포일 95. 9. 21)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중 “사업화”를 “실용화”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목적) 중 “이 요령은 공업발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와 중소기업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이하 “실용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 2조(정의)중 “사업화”를 “실용화”로 한다.

제 3조(기술평가대상) 중 “사업화”를 “실용화로 한다.

제 6조(기술평가 결과통보) 중 “사업화”를 “실용화”로 한다.

제 7조(사업화자금의 지원등) 중 ①항의 “사업화”를 “실용화”로 한다.

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업진흥청장은 실용화한 제품중 수요창출을 위하여 우선 구매지원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기간에 우선구매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설명서 1부
2. 당해 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3. 제품에 관한 검토의견서 1부

③항을 삭제한다.

제 8조(표시) 중 ① “사업화”를 “실용화”로 한다.

제 10조(신기술업체 변경)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요령 제6조에 의거 신기술을 받은 자가 생산조건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0조(경비부담)를 제11조(경비부담)로, 제11조(사후관리)를 제12조(사후관리)로, 제12조(규격안제출)를 제13조(규격안제출)로, 제13조(운영세척)를 제14조(운영세척)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5-114 호

기간통신사업자이용약관신고기준

(공포일 95. 9. 13)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약관의 신고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역 무 별	신고기준금액	
전화역무	행정전화역무 50억원 이하	
가입전신역무	50억원 이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이동전화역무	450억원 이하
	무선호출역무	730억원 이하
	국내위성통신역무	50억원 이하
	국제위성통신역무	50억원 이하
	선박무선역무	50억원 이하
	주파수공용통신역무	50억원 이하

역	무	별	신고기준금액
기타역무(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역무와는 별개임)	데이터통신역무		330억원 이하
	축적·전송팩스역무		50억원 이하
	전화정보역무		50억원 이하
	전보역무		50억원 이하
	팩킷통신망역무		50억원 이하
	기타통신망역무		50억원 이하
	전기통신설비대여역무		50억원 이하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이용약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합니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5-121 호

무선설비에대한기술적조건개정

(공포일 95. 10. 2)

디지털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서늑의 기술적 조건 제2호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라. 기지국과 이동국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32MHz 이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지국

채널중심주파수로부터 $\pm 750\text{MHz}$ 떨어진 주파수에서 30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된 변조전력이 평균전력보다 45데시벨이상 낮을 것.

(2) 이동국

채널중심주파수로부터 $\pm 900\text{MHz}$ 떨어진 주파수에서 30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된 변조전력이 평균전력보다 42데시벨이상 낮을 것.

마. 스퓨리어스 발사강도는 30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된 최대출력 발사상태에서 평균전력에 비하여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기지국

(가) 869MHz이상 894MHz이하의 주파수대에서는 채널중심 주파수로부터 $\pm 750\text{M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5데시벨이상 낮고, $\pm 1.98\text{M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60데시벨이상 낮을 것.

(나) 869MHz이상 894MHz이하의 주파수대이외의 주파수대에서는 60데시벨이상 또는 $43+10\text{Log(PY)}$ 데시벨이상 낮을 것.

(2) 이동국

(가) 824MHz이상 849MHz이하의 주파수대에서는 채널중심 주파수로부터 $\pm 900\text{M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2데시벨이상 낮고, $\pm 1.98\text{M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54데시벨이상 낮을 것.

(나) 824MHz이상 849MHz이하의 주파수대이외의 주파수대에서는 $43+10\text{Log(PY)}$ 데시벨이상 낮을 것.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검정 신청중에 있는 장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 대통령훈령 제 60-2 호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규정개정

(공포일 95. 9. 29)

제 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기획단에는 규제완화반, 간접자본반, 중소기업반, 정보화촉진반, 교통물류반을 두며, 각반의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또는 파견된 공무원중 2급 또는 3급인 자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